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5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확대 등	3
-----------------------------------	---

※ 참고자료	14
--------------	----

1. 자율심의제도 개요	14
--------------------	----

2. 자율심의기구 등록 가능 기관 및 단체 현황	16
----------------------------------	----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현황 ..	18
---	----

I. 개요

1.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5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종헌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8. 19.
- (3) 회 부 일 : 2024. 8.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아울러 현행법 제8조 및 제10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임에도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7호,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확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식품등 위생관련 비영리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을 추가하고,

현행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제10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규정을 ‘영업자’ 뿐만 아니라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	7. -----

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
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
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 10. (생략)

② (생략)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
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
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다른 자
나 다른 자-----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
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식품등의 표시
· 광고와 관련한 업무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를 받아 설립된 식품등 위생
관련 비영리법인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신 설>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u>영업자의</u>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⑥ (생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u>영업자의</u>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생략) ⑧ (생략)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 <삭 제> ③ ----- ----- ----- ----- <u>식품등</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식품등</u> ----- ----- -----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한 날(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기구) 현행법 제10조¹⁾는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①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²⁾에 따른 동업자조합, ②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³⁾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⁴⁾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④ 「소비자기본법」 제29조⁵⁾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③~⑧ (생략)
- 2) 「식품위생법」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3) 「식품위생법」 제64조(설립) ①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단체 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5) 「소비자기본법」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현행법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기관 및 단체 현황 >

구 분	개수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9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1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1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18
합 계	29

자료: 식약처

□ 개정안은 「민법」 제32조6)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식품등 위생 관련 비영리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7)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도 식품등의 표시·광고와 관련한 업무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식품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식품등 위생 관련 비영리법인 현황 >

2024. 7. 기준(동업자 조합 및 미활동 법인 제외)

연번	법인명	연번	법인명
1	(사)한국카카오연구회	10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2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11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
3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12	(사)집단급식조리협회
4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13	(사)한국커피과학회
5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14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6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	15	(사)한국향미유희회
7	(사)한국베버리지마스터협회	16	(사)한국주류안전협회
8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	17	(사)한국외식산업협회
9	(사)한국급식협회		

자료: 식약처

- 6)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의(그 명칭에 관계없이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현황 >

연번	기관(단체)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
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한국침대협회
5	한국학원총연합회
6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7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8	대한안경사협회

자료: 식약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19. 3.14.) 이전에는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식약처장 또는 식약처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음.⁸⁾

□ 그런데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⁹⁾을 내린 것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

8) 「식품위생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 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6, 2016.12.27.)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 2015헌바75

고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 규정을 통합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¹⁰⁾되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심의제도’가 도입되었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인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¹¹⁾

□ 2019년 3월 자율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특수영양식품·특수 의료용도식품·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각각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여 운영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다양한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영업자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3개 단체 외에도 현행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동업자조합(9개) 및 소비자단체(16개) 등 25개에 달하고,

10)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11) 2018.6.28.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심의 건수의 대부분('24. 8월 기준 전체 심의건수의 92.8%)을 차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기구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독점체재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등록(2023년 12월)으로 인하여 경쟁체재로 전환되었으며,

자율심의기구가 많아질 경우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현황 >

구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록일자	'19.3.25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 도식품('19.3.26), 기능성표시식품('21.6.2)	'23.12.11
전담인력	18명	3명	4명
심의대상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	총 25명으로 구성 (1분과 13명, 2분과 12명) *심의수당: 25만원	총 25명으로 구성 (A분과 12명, B분과 13명) *심의수당: 25만원	총 14명 구성
심의주기	4회/월 *회당 1개 분과 참석	2회/월 *회당 1개 분과 참석	4회/월
심의방법	심의자료 사전 검토* 후 대면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 *협회 광고심의부 1차 검토 → 위원별 2차 검토	위원별 심의자료 사전 검토 후 대면 회의를 통해 최종심의	위원별 심의자료 사전 검토 후 대면 회의를 통해 최종심의
심의수수료	5~20만원/건 *광고매체나 분량에 따라 차등적용	15만원/건	11~21만원/건
심의건수 ('24.8.기준)	22,804건/년 (691건/회) *협회 광고심의부 직원수 : 21명	1,301건/년 (81건/회) *협회심의팀 직원수 : 3명	1,879건/년 (63건/회) *협회심의팀 직원수 : 4명

자료: 식약처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 현행법 제8조¹²⁾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¹³⁾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현행법 제10조제3항¹⁴⁾에서는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의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제2조(정의)에서는 영업자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
- 12) 「식품위생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생략)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8.~10. (생략)
- 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 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 외에 식품등을 취급·판매하는 약국, 농산물 포장업체, 온라인 식품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영업자’ 뿐만 아니라 ‘식품등을 취급·판매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개정내용 >

현 행	→	개정안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1항제7호
다른 영업자 나 다른 영업자 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자 나 다른 자 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조제3항 및 제7항제2호		제10조제3항 및 제7항제2호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금지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등의 표시·광고 제한 금지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검토

- 영업자의 광고 심의기구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자율심의기구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최근 자율심의기구가 복수로 등록, 운영되어 영업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바, 현행 제도 틀 내에서 우선 안정적 유지, 운영 후 추후 기구 등록 범위 확대 필요성 검토 필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신중검토

- 심의기구 난립, 경쟁적 심의 기준 하향 조정, 심의 일관성 확보 곤란 등 복수 기관 지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반대 입장
- 특히 개정안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식품 등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
- 최근 자율심의기구 신규등록으로 선택권의 확대는 충분하며, 심의기관별 상이한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으로 산업계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현행 유지 요청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수용

- 심의 역량을 갖춘 다양한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 범위 확장에 찬성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자율심의제도 개요
-------------	------------------

□ 자율심의기구 등록

- **(요건)**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여 등록

< 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구비 (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
- 표시·광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 및 사무실** 구비

- **(절차)**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식약처장에게 제출
→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운영 기준, 심의 대상, **심의 기준**,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 심의 수수료

□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각 요건 해당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산업계 종사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 심의위원회 위원 요건 >

-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의기준

- **(자율심의기구)**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안됨
- **(식약처)**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가 심의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약처 심의기준 (시행령 제4조) >

-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 자율심의기구 사후관리

- **(시정명령)** 자율심의기구가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시정명령
- **(등록취소)** 자율심의기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참고 2**자율심의기구 등록 가능 기관 및 단체 현황****□ 대상 기관 및 단체 현황**

구 분	개수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9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1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1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18
합 계	29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9개)

연번	단체명
1	한국외식업중앙회
2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3	대한제과협회
4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5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6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7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8	한국인삼제품협회
9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1개)

연번	단체명
1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1개)

연번	단체명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18개)

단체명		설립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76. 4. 16.
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원 (12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76. 5. 20.
	소비자교육중앙회	'72. 11. 7.
	한국YMCA전국연맹	'14. 4. 2.
	한국YWCA연합회	'22. 4. 20.
	한국소비자교육원	'81. 6. 9.
	소비자시민모임	'83. 1. 20.
	한국소비자연맹	'70. 1. 20.
	녹색소비자연대	'96. 10. 11.
	소비자공익네트워크	'94. 12. 8.
	한국부인회총본부	'63. 10. 9.
	대한어머니회중앙회	'58. 3. 17.
	미래소비자행동	'10. 9. 4.
소비자단체 협의회 비회원 (5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9. 12. 26.
	소비자와 함께	'12. 11. 20.
	금융소비자연맹	'01. 3.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89. 7. 8.
	해피맘	'18. 6. 1.

참고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현황

□ 자율심의기구 신고

- (요건)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자율심의기구 신고 요건 >

-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자의 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심의 대상·심의 기준
-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 (신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 ②한국신문윤리위원회, ③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및 ④그 밖에 사업자 등이 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는 기신고된 것으로 봄

□ 자율심의기구 현황

연번	기관(단체)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
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한국침대협회
5	한국학원총연합회
6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7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8	대한안경사협회